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07
----------	-------

발의연월일 : 2026. 9. 16.

발 의 자 : 이훈기 · 양부남 · 최민희
박지원 · 권향엽 · 강준현
곽상언 · 장종태 · 민병덕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변경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요금 산정 방식도 알 수 없어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국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8%에 달하며, OTT 이용자의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은 65.5%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플랫폼,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환불 규정 등 이용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는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서비스 내용, 요금, 해지 절차, 환불 기준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 사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항의 신고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약관의 포함 사항, 신고 절차 및 보완 요구의 기준, 홈페이지 게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로 한다.

제9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 용약관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 업자는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서비스 내용, 요금, 해지 절차, 환불 기준 등 이용약관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u>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 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 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 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 의 포함 사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 항의 신고에 보완이 필요한 경 우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u>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약관의 포함 사항, 신고 절차 및 보완 요구의 기준, 홈페이지 게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

-----,

-----.

1. -----

-----,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

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 ⑤ (생략)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의한 <u>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u> 7. (현행과 같음)
---	---